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실수요자	④ 상호(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수출(수입) 명세

⑦ 품목 번호(HS)	⑧ 품명 (학명, 보 통명)	⑨ 규격 (성별, 연령)	⑩ 수량	⑪ 단가	⑫ 금액 (US \$)	⑬ 수출 입국	⑭ 용도	⑮ 사육장 주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및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⑥품명란은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
2. ⑨규격란은 압수·연령 등을 적습니다.
3. ⑩수량란은 수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4. ⑫금액란은 수출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FOB), 수입의 경우에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적습니다.
5. ⑭용도란은 학술연구용·관람용·내수용 등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